

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일정표

Ⅰ 주요사무일정 …… 2

Ⅱ 세부일정 …………… 4

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23. 10. 13.부터 '24. 5. 10.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23. 11. 15.까지	수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23. 11. 12.부터 '24. 2. 10.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규§136의4
'23. 12. 2.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법§122 규§26의2③ 규§51①②
'23. 12. 12.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4. 1. 11.까지	목	각급선거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3.11.(월)까지]	법§53①②
1. 11.부터 4. 10.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 10.까지	토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5 규§136의4
2. 10.부터 4. 10.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21.부터 3. 1.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3. 11.에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3. 19.부터 3. 23.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3. 21.부터 3. 22.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3. 27.부터 4. 1.까지	수 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 규§136의15
3. 27.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3. 28.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3. 29.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3. 29.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3. 31까지	일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4. 2.부터 4. 5.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4. 5.부터 4. 6.까지	금 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4. 10.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4. 22.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6. 9.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지급	선거일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세부일정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정치자금법」은 “정금법”으로, 「정치자금 사무관리 규칙」은 “정금규”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병법”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병령”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토론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자법”으로 각각 약기함.

• 재외선거 :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상시	기부행위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서면신고(정당·방송·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 등은 제외) ※ 여론조사개시일 전 2일까지	누구든지	상시	법§112 ~ §117 법§108③
'23. 8. 14.(월)까지	재외위원회 위원 추천 (중앙위원회 지명위원) <중앙위원회에> 재외위원회 위원 추천 (정당·공관장 추천위원) <중앙위원회에>	공관 정당, 공관	재외위원회 설치 개시일전 60일까지	법§218② 규§136의2①②
'23. 10. 13.(금)부터 '24. 5. 10.(금)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재외위원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천재지변 등의 발생에 의한 재외위원회 미설치·재외선거사무 수행 중지 결정·공고 및 통지 등 <정당·후보자, 해당 재외위원회 또는 재외투표 관리관에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결정일	법§218의29 규§136의29
'23. 10. 13.(금)까지	재외위원회 위원 위촉 재외위원회 명칭·관할구역 등 공고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개설·공고 재외위원회 간사·서기 위촉·보고 <중앙위원회에>	중앙위원회 재외투표관리관 구·시·군의 장 재외위원회	선거일전 180일까지 위촉한 때 지체없이	법§218② 규§136의2③ 법§218⑧ 규§136의2⑤ 법§218의4④ 법§218⑥ 규§136의2⑦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23. 10. 13.(금)부터 '24. 4. 10.(수)까지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	정당·후보자가 설치·운영하는 기관·단체 등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9②
'23. 10. 30.(월)부터	전과기록(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 조회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법§49⑩ 규§20⑦
'23. 11. 11.(토)까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공무원 임면사항 통보 (재외위원회, 구·시·군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구·시·군의 장	임면한 때 지체없이	법§218의34①, §39② 규§12①
'24. 2. 10.(토)까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재외선거인등록 신청대상자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5 규§136의4
'23. 11. 12.(일)부터 '24. 2. 10.(토)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투표관리관,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규§136의4
	재외선거인 영구명부 정비	중앙위원회		법§218의8② 규§136의8②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재외투표관리관	신고·신청기간 만료일 후 즉시	법§218의6 규§136의5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송부 (중앙위원회에)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즉시	법§218의7① 규§136의6①~③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신고서 송부 (구·시·군의 장에게)	중앙위원회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접수 후	법§218의7② 규§136의6④
'23. 11. 15.(수)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 (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4, §60조의2① 규§2①②
'23. 12. 2.(토)까지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통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10일 (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법§122 규§26의2③, §51①②
'23. 12. 10.(일)까지	선박의 명칭과 위성통신번호(팩시밀리 번호 포함) 등 선상투표 선박현황 통보 (중앙위원회에)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현황 기준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2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후 10일까지	규§10의3②
'23. 12. 11.(월)부터 '24. 5. 10.(금)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8의2, §8의3
'23. 12. 12.(화)까지	선거구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직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일전 120일까지	법§53⑤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23. 12. 12.(화)부터 '24. 4. 10.(수)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90① 법§93①
'23. 12. 12.(화)부터 '24. 5. 10.(금)까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및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포함) <관할위원회에>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사무소를 설치·변경하는 때 지체없이 [실시요청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61의2①③ 정금법§34①④ 정금규§32②, §34①
'23. 12. 12.(화)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국회의원,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일전 120일 (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법§60의2①
'23. 12. 29.(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자치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 (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24. 1. 28.(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 (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전과기록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 첨부)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법§60의2②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선거구위원회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	규§24②
	피선거권 조회 <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선거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수리 후	법§60의2③ 규§26②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변경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법§61①, §63① 규§28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지체없이	법§62③④, §63① 규§28①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 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려는 때	법§60의3② 규§26의2①
	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규§21 정금법§34①③, §35① 정금규§32②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겸임·변경신고 <선거구위원회에>		회계책임자 선임·신고한 때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 개설신고 <선거구위원회에>		발송일전 2일까지 (선거기간 개시일전 3일까지 발송)	법§60의3① 규§26의2⑤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수회에 걸쳐 발송하려는 경우 최초신고시 일괄신고 가능) <선거구위원회에>		발간 즉시	법§60의4①③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 제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선거구위원회에>		매월말일 및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 기준	법§60의2⑨ 규§26⑤
	예비후보자 당적조회(시·도위원회 일괄조회 가능) <정당에>		시·도위원회 구·시·군위원회	
'23. 12. 12.(화)부터 '24. 4. 10.(수)까지	시·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구성·운영	시·도위원회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0의3② 규§2의4①
'23. 12. 19.(화)까지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3개월까지	규§10의3①
'24. 1. 1(월)부터 3. 27.(수)까지	정당·정책의 방송연설 신고 <중앙위원회에>	중앙당대표자	방송일전 3일까지 (방송연설은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법§137의2①⑦ 규§60의2
'24. 1. 10.(수)까지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시·도 위원회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의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제공 <선박회사에>	중앙위원회	선거일전 3개월까지	규§10의3③
1. 11.(목)까지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일전 90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는 선거일전30일)까지	법§53①②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 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때 그 직의 사직 <해당 기관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사람	선거일전 90일 (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법§60②
1. 11.(목)부터 3. 20.(수)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법§82의3①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1. 11.(목)부터 4. 10.(수)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 (그 후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 부터 선거일까지	법§103⑤
	의정활동 보고 금지(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은 가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①
1. 11.(목)부터 3. 10.(일)까지	당원집회 개최 신고 (개최지역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정당	선거일전 90일부터 개최일전일까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집회 개최금지)	법§141①② 규§63①
1. 11.(목)부터 3. 27.(수)까지	정당·정책의 신문광고 게재 인증서 교부 신청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광고전까지(광고게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법§137①③
1. 11.(목)까지	재외국민수 현황 통보 (재외위원회에)	공관의 장	선거일전 90일까지	규§136의16①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명 등 통보 (중앙위원회에)	국방부장관		규§136의16②
1. 31.(수)까지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결정·공고	재외투표관리관 (2이상 공관을 둔 국가는 대사관)	매년 1월 31일까지	법§218의5④
2. 10.(토)까지	재외선거안내문 작성·게시 (중앙위원회, 공관 홈페이지 등에)	중앙위원회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18⑤ 규§136의19①
	추가 재외투표소(병영내 투표소) 설치 여부 결정	재외위원회		법§218의17② 규§136의16③
2. 10.(토)부터 3. 27.(수)까지	선거기간전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진행방법 등 통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지방의원선거는 제외함]	언론기관	대담·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법§82① 규§45④
2. 10.(토)부터 4. 10.(수)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10.(토)부터 4. 20.(토)까지	공정선거지원단 인원 추가 구성·운영	각급위원회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0의2② 규§2의3②
	중앙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인원 추가 구성·운영	중앙위원회		법§10의3① 규§2의4①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운영	구·시·군위원회		법§146의2 규§67①
2. 11.(일) 이전부터	후보자 거주요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 [지방선거에 한함]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법§16③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2. 11.(일)부터 4. 1.(월)까지	재외선거관리록 비치·작성	재외투표관리관	선거일전 59일부터 재외투표기간 만료일까지	법§218의22③
2. 21.(수)부터 3. 1.(금)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중앙위원회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규§136의8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법§218의9 규§136의9
2. 28.(수)까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및 작성상황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명부 작성 후 지체없이	규§136의9⑤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중앙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후 지체없이	규§136의9⑥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규§136의8④
	재외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중앙위원회	명부 작성 후 지체없이	규§136의8③
	재외선거인명부 등 전산자료 복사본 전송 (재외투표관리관에게)			규§136의9⑥
2. 28.(수)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장소,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 공고·안내	명부작성권자 재외투표관리관	열람개시일(3. 2.)전 3일까지	법§218의34①, §40③
3. 2.(토)부터 3. 6.(수)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 (명부작성권자, 행정안전부장관,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5일간 (선거일전 39일부터 35일까지)	법§218의10 규§136의10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명부작성권자에게)		열람기간중	법§218의11①
3. 7.(목)부터 3. 10.(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에게)	명부작성권자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법§218의11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구·시·군위원회에)	이의신청인, 관계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법§218의11②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의 장에게)	구·시·군위원회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218의11⑤, §218의34①, §42②
3. 7.(목)부터 3. 1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누락자 등재신청 (명부작성권자에게)	해당 선거권자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재외선거인 명부 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법§218의11③
	재외선거인명부 등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에게)	명부작성권자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218의11⑤, §218의34①, §43②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2. 27.(화)부터 3. 27.(수)까지	대담·토론회 초청 후보자 선정을 위한 언론기관의 지지율 여론조사결과 수집기간	언론기관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법§82의2④ 토론규§22
3. 8.(금)까지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 조사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기간개시일전 20일까지	법§65⑦
3. 9.(토)까지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지정·공고	중앙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전 10일까지	규§11⑥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 및 신고서 발송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구·시·군의 장		법§38③
3. 11.(월)까지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해당 기관에>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	선거일전 30일까지	법§53②④
	선상투표신고 수신 팩시밀리 번호, 시·도 위원회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의 선상투표 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송부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회사		규§10의3③
	선박에 선상투표신고서와 안내문 등 비치	선장	선상투표신고서 등을 송부받은 후	규§10의3④
3. 11.(월)까지	읍·면·동위원회의 대행할 직무의 범위· 대행기간 등 결정·공고·통지 <읍·면·동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30일까지	법§13③ 규§3③④
	후보자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 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선거일전 30일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법§71⑤ 규§36①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시설명·이용일자 등 통보기한 <관할 토론위원회에>	공영방송사 등	선거일전 30일까지	토론규§27②
3. 11.(월)까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 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 <중앙위원회에>	위성방송시설 경영·관리자	선거일전 30일까지	법§218의14①, §71⑤ 규§36①
3. 11.(월)	재외선거인명부 확정	중앙위원회	선거일전 30일	법§218의13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및 확정상황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명부 확정 후 즉시	법§218의13② 규§136의11①
	재외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및 확정상황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중앙위원회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중앙위원회에)	구·시·군위원회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후 지체없이	규§136의11②
	재외선거인명부등 송부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중앙위원회	재외선거인명부등 송부받은 후 지체없이	법§218의13③ 규§136의11③
	해당공관 관할구역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 등의 명부 출력 또는 전산자료 보관 등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재외선거인명부 등 송부 받은 즉시	규§136의11④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명부작성권자	발견한 때마다 지체없이	규§14④, §136의33①
3. 16.(토)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 (구·시·군의 장에게)	예비후보자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법§60의3④
3. 16.(토)부터 3. 22.(금)까지	무소속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시까지	법§48②④
3. 18.(월)까지	선거벽보, 선거공보·선거공약서 작성·제출수량 등 공고·통지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선거공약서는 지방자치단체선거에 한함]	선거구위원회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법§64③, §65⑫, §66⑧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통지 (정당·후보자에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까지 (통지는 후보자등록 시에)	법§71⑥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 시설과 일정 지정·공고 (정당·후보자에게)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3일까지	법§218의14①, §71⑥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의 일괄공고	구·시·군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전일까지	법§31③ 규§7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통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부대장, 경찰관서의 장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법§65⑤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포함) 작성 공무원 임면사항 통보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임면한 때에 지체없이	법§39② 규§12①	
3. 19.(화)부터 3. 23.(토)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법§37 규§10
	선거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이중 등재여부 확인			법§37③
	거소·선상투표신고 (구·시·군의 장에게)	거소·선상 투표신고 대상자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8① 규§11①②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구·시·군의 장		법§38⑤⑥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관할 구·시·군위원회에게)	군인·경찰공무원		법§65⑤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작성 후 지체없이	규§10⑥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및 거소·선상 투표신고인명부 등본(전산자료복사본 포함)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 명부를 작성한 때 즉시	법§37④, §38⑥
3. 21.(목)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 공고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부터 등재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확인기간 및 방법 등 공고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열람 개시일 전 3일까지	법§40③ 규§13③ 법§44②③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운영기간 등 공고	재외위원회	선거일전 20일까지	법§218의17③
3. 21.(목)까지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시설명·이용일자 등 통보기한 〈관할 토론위원회에〉	종합 유선방송사업자	선거일전 20일까지	토론규§27③
3. 21.(목)부터 3. 22.(금)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최근 5년간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법§49④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 첨부)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등록신청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교육감선거]			교자법§49③
	비당원확인서 제출 [교육감선거]			교육감선거 관리규칙§2
	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 〈선거구위원회에〉			규§21
	기탁금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법§49④, §56①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통지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시	법§71⑥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	규§24②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설치·변경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법§61①, §63① 규§28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의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지체없이	법§63① 규§28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인장의 인영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임·교체신고시	규§21
	회계책임자 선임·변경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연락소장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선거연락소 설치신고를 하는 때(변경사유 발생 후 지체없이)	정금법§34①③, §35① 정금규§32②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관할위원회에>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
	피선거권 조회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후보자등록마감 후	법§49⑧ 규§20③
	전과기록 조회 <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법§49⑩ 규§20③
	정당·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후보자등록마감후	법§150③④⑤⑥
	투표용지 인쇄원고 작성·송부 <구·시·군위원회에>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후 지체없이	규§71①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의 명칭·소재지 공고	구·시·군위원회	인쇄소를 결정한 때 지체없이	법§152②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선거구 공고·보고 <상급위원회에>·통지<하급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지체없이	법§188②③⑤
	후보자 사퇴신고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하고자 하는 때	법§54
	후보자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사유발생시	규§22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에 관한 공고·보고<상급위원회에>, 통지<하급위원회에>·통보<한국방송공사에>	선거구위원회	지체없이	법§55 규§23의2① 규§38⑦
	후보자등록무효 통지 <후보자, 추천정당에>			법§52④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정강·정책홍보물 2부 제출(전자파일로 대신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배부전까지	법§138④
	정책공약집 2권 제출(전자파일로 대신 제출 가능) <관할위원회에>	정당 (판매할 당부)	발간 즉시	법§138조의2③
	정당기관지 2부 제출(전자파일로 대신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중앙당	발행 즉시	법§139③
	신문광고게재 인증서 교부신청(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중앙위원회에>		광고전까지	법§69⑤
	방송광고의 일시와 광고비용 등 통보 <중앙위원회에>	방송시설경영자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법§70③ 규§35①
	선거공약서 배부 신고<선거구위원회에>, 제출<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후보자	신고 : 배부일 전일까지 제출 : 배부 전까지	법§66⑥
	현수막 표지 교부신청 <관할구·시·군위원회에>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때	법§67① 규§32②
	후보자의 방송시설이용 방송연설 신고 <선거구위원회에>	중앙당, 후보자	방송일전 3일까지	법§71⑩ 규§36⑦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일시·소요시간 등의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방송일전 2일까지	법§72③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 시간 등의 통지 <정당·후보자에게>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려는 때	법§72① 규§37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 장치, 녹음기·녹화기의 표지 교부신청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려는 때	법§79⑥⑩ 규§43②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 및 개최계획 제출 <선거구위원회 또는 개최지 관할구·시·군위원회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	개최일전 2일까지	법§81③ 규§44①④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의 표지교부 신청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용 자동차와 선박을 운행하려는 때	법§91④ 규§48②
	불법시설물 표시문 철폐	각급위원회	불법시설물 철거 등에 불응하는 때	법§271② 규§145①
	불법인쇄물 공고 <관할구·시·군위원회 게시판에>		불법인쇄물을 수거한 때	법§271② 규§145②
	불법선전물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요청 <해당 우체국장에게>	각급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제외)	불법선전물을 우송하려하거나 우송 중임을 발견한 때	법§272①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불법선전문 우송중지 사실 통보(발송인)· 공고(발송인 주소 미기재시)	우체국장	우송을 중지한 때	법§272②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위성방송 시설과 일정 통지 (정당·후보자에게)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 신청시	법§218의14①, §71⑥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제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위원회에)	정당		법§218의14④ 규§136의13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작성·송부 (재외선거인등, 외교부, 재외동포청, 공관에) 무투표실시 안내문 인터넷 게시 및 통지 (재외위원회에)	중앙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즉시	법§218의14④ 규§136의13
	후보자 사퇴·사망·등록무효 안내문 인터넷 게시 및 통지 (재외위원회에)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지체없이	법§188⑤ 규§136의28①
	후보자 사퇴·사망·등록무효 안내문 인터넷 게시 및 통지 (재외위원회에)		사유발생 시 지체없이	법§55 규§136의28①	
3. 22.(금)까지	경력방송원고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 까지	법§73⑤ 규§38②	
3. 23.(토)까지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사본 및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 공시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 까지	법§46⑤ 규§18④	
3. 24.(일)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거소·선상투표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법§44①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지체 없이	규§16①	
	거소·선상투표신고서, 거소·선상투표신고인 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즉시	규§16①②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 시 그 사실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발견한 때마다 지체없이	규§14④	
3. 24.(일)까지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재외위원회에)	보조금배분 대상정당	선거일전 17일까지	법§218의20②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선정(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 밖에 없는 경우)	재외위원회		법§218의20④	
3. 24.(일)부터 3. 26.(화)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법§40①②, §41① 규§13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1②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구·시·군위원회에)	이의신청인, 관계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법§42①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의 장에게)	구·시·군위원회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2②
3. 25.(월)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법§60의3①
	경력방송원고 송부 (한국방송공사(해당 지역방송국)에)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법§73①⑤ 규§38②④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 (선거구위원회, 시·도 또는 중앙위원회)	한국방송공사 (지역방송국)	후보자의 경력방송 일정을 결정한 때	법§73① 규§38⑥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원고제공 (방송시설 경영·관리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원고제공을 요청받은 때 지체없이	법§74① 규§39①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실시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방송일전 2일까지	법§74②
	재외투표용지 원고 작성·송부 (재외투표관리관에)	중앙위원회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전 2일까지	법§218의18②④ 규§136의18
	재외투표용지 모형 안내 (재외투표관리관에)			
	재외투표용지 원고 금고 등에 보관	재외투표관리관	송부받은 즉시	규§136의17
3. 26.(화)까지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 신고 (관할구·시·군위원회에)	기관·시설의 장	거소투표신고마감일후 3일까지	법§149①
	재외투표소 설비	재외투표관리관	재외투표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추가 투표소는 운영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규§136의15⑤
3. 27.(수)까지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 공고	구·시·군위원회	신고만료일의 다음날까지	법§149② 규§70②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요청 (10명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공고일 후 2일 이내	법§149④
	기표소 설치요청서 사본 제출 (구·시·군위원회에)	기표소 설치를 요청한 정당 등	기표소 설치를 요청한 때 지체없이	규§70③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일시 및 장소신고(관할구·시·군위원회에)	기관·시설의 장	기표소설치일전 2일까지	법§149⑤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일시 및 장소공고	관할 구·시·군위원회	기표소 설치일 전일까지	법§149⑤ 규§70④
3. 27.(수)까지	재외투표 회송참관인 선정·신고 (중앙위원회에)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	선거일전 14일까지	규§136의23⑧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3. 27.(수)부터 4. 1.(월)까지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선거인등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 규§136의15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재외투표기간 중 재외투표소에서)	보조금배분 대상정당		법§218의20③
	재외투표소투표록 작성	재외투표소 책임위원	재외투표기간 중 매일	법§218의22 규§136의20⑥, §136의21③
	재외투표 및 재외투표소투표록 등 회송 (외교부 경유, 중앙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없이	법§218의21②, §218의22④ 규§136의23
	재외투표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중앙위원회	재외투표 인수 후 지체없이	법§218의21③ 규§136의23⑦
	공관개표 실시사유 발생보고(사유발생시) (중앙위원회, 재외위원회에)	재외투표관리관	사유발생 후 즉시	법§218의24③ 규§136의25①
	공관개표 실시 결정(사유발생시)	중앙위원회	재외투표관리관의 보고를 받은 때	법§218의24③ 규§136의25②
	공관개표소 실시 결정 통지 등(사유발생시) (정당, 관할 선거구위원회, 해당 재외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에게)		공관개표 실시 결정 후 지체없이	법§218의24⑥ 규§136의25②
3. 27.(수)까지	선거벽보 제출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3. 27.(수)부터 3. 28.(목)까지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구·시·군위원회에)	해당 선거권자, 구·시·군의 장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법§43①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 결정·통지(구·시·군의 장, 신청인에게)	구·시·군위원회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3②
3. 28.(목)까지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 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 신청 및 그 비용 납부 (구·시·군의 장에게)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제외)	법§46②③⑤ 규§18③
3. 28.(목)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법§33③
3. 28.(목)부터 4. 9.(화)까지	선거운동기간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	법§59
3. 28.(목)까지	대담·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통지	구·시·군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토론규§23①
3. 28.(목)부터 4. 9.(화)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등의 대담·토론회 개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선거운동기간중	법§82의2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대담·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구·시·군선거 방송토론위원회		법§82의2③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위성방송시설 이용 방송연설 신고 (중앙위원회에)	정당	방송일 전 3일까지	법§218의14① §71⑩, 규§36⑦
	위성방송시설 이용 방송광고 실시 통보 (중앙위원회에)	위성방송시설 경영자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법§218의14① §70③ 규§35①
3. 28.(목)부터 4. 10.(수)까지	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람 (선거구위원회에)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법§49① 규§20⑤
3. 29.(금)까지	선거공보 제출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정당,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첨부	구·시·군위원회	제출마감일후 2일 (섬 및 산간오지는 3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책자형선거 공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해당 상급위원회에)	제출요구받은 이의제기자, 정당·후보자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법§64⑥, §65⑫ 규§29⑦, §30⑫
	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책자형선거 공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허위사실 게재 및 사생활 비방에 대한 고발 사실 공고 및 공고문사본 투표구와 (사전)투표소 입구에 첨부	상급위원회, 선거구위원회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의 판명 또는 사생활 비방에 대한 고발시	법§64⑥⑦⑪, §65⑫ 규§29⑧, §30⑫
	대담·토론회 참석확인서 또는 불참사유서 제출 ※ 합동토론회 개최동의서 제출	통지를 받은 후보자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날까지	토론규§23②
	토론회 등의 개최 공표·통지 (정당·후보자, 선관위에)	구·시·군선거 방송토론위원회	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	토론규§28
3. 29.(금)	선거인명부 확정	구·시·군의 장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 후 지체없이	규§16①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시	규§14③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중앙위원회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받았을 때	법§44의2①③ 규§16의2①
3. 30.(토)부터 4. 10.(수)까지	선거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에) ※ 사전투표기간 종료 전에는 구·시·군위원회에 ※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는 구·시·군위원회와 읍·면·동위원회에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 후 발견시마다	규§16의2⑤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로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구·시·군의 장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법§44②
3. 31.(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읍·면·동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무투표 통지 <거소·선상투표신고인에게>	구·시·군위원회		법§188② 규§109①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거소투표안내문 동봉) <거소투표신고인에게>			법§65⑥, §154①⑤ 규§77
	군인 등 신청자에게 선거공보 발송			법§65⑥
투표안내문 (점자형 포함) 발송 (선거공보 동봉) <매세대에게>	읍·면·동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3. 31.(일)부터 4. 10.(수)까지	우편투표함 비치	구·시·군위원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 다음	규§80
	허위신고자등에 대한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사유 및 (사전)투표소 투표의 뜻 통지 <해당 선거인에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지체없이	법§154② 규§78②
3. 31.(일)부터 4. 10.(수)까지	재외투표함 설치 및 재외투표 접수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10일부터 선거일 오후6시까지	법§218의23 규§136의24
4. 1.(월)까지	선상투표용지 전송 <해당 선상투표자가 송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9일까지	법§154의2①
4. 1.(월)까지	선상투표 입회인 선정·통지 <선상투표자에게>	선장	선상투표일 전일까지	규§86의2⑤
	귀국투표 신고(선상투표)	선상투표기간 개시일전에 귀국한 선상투표신고인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법§158의3⑬
4. 1.(월)까지	사전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 기간 공고·통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및 투표구마다 공고문 첨부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9일까지	법§148② 규§68⑤
4. 2.(화)부터 4. 5.(금)까지	선상투표 및 선상투표지 팩시밀리 전송 <해당 시·도위원회에>	선상투표자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선상투표지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시·도위원회	선상투표지를 수신하는 기간 동안 매일 1회 이상	법§158의3⑩ 규§86의3③
4. 2.(화)부터 4. 10.(수)까지	귀국투표 신고(재외선거)	재외선거인등	선거일전 8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법§218의16③ 규§136의14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4. 3.(수)까지	사전투표소의 참관인 선정·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7일까지	법§162② 규§3③, §88①
	투표용지 모형공고	구·시·군위원회		법§152① 규§75
4. 4.(목)까지	사전투표소 설비 (읍·면·동마다)	사전투표관리관	선거일전 6일까지	규§68④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사전투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읍·면·동위원회		법§162③ 규§3③, §88①
4. 5.(금)부터 4. 6.(토)까지	사전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사전투표기간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신고 후 언제든지	법§162② 규§88①
	사전투표 [매일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사전투표관리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48①, §155②, §158
사전투표소에서의 회송용봉투 발송 및 관내사전투표함 구·시·군위원회 인계	매일의 사전투표 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법§158⑥	
4. 5.(금)까지	개표소 공고 [2개소 이상 설치시 개표소별 개표할 선거명 공고·통지(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구·시·군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①② 규§95②
4. 7.(일)까지	공관개표소의 개표참관인 신고(사유발생시) 〈재외위원회에〉	보조금배분 대상정당	선거일전 3일까지	법§218의24⑤
	공관개표소의 개표참관인 선정(사유발생시) (개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는 경우)	재외위원회		
4. 8.(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2일까지	법§161② 규§88①②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구·시·군위원회에〉	읍·면·동위원회		사전투표기간만료일 후 2일까지
4. 9.(화)까지	사전투표소 투표자가 반영된 선거인명부 출력		선장	선거일전일까지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작성 및 팩시밀리 전송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 소재지 관할시·도위원회에〉			
4. 9.(화)까지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선상투표지 봉투 등 제출 〈해당 시·도위원회에〉	선장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법§158의3⑧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일전 2일까지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의 명단 작성·통지 〈읍·면·동위원회에 → 투표관리관에게〉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선거일전일까지	법§154③ 규§78③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 <읍·면·동위원회에> 투표용지, 투표함, 선거인명부 인계 <투표관리관에게>	구·시·군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선거일전일까지	법§151① 규§16의2③④
	투표소의 설비	읍·면·동위원회 투표관리관		법§147① 규§67의2
	투표참관인 선정(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인 미만시)	읍·면·동위원회		법§161③ 규§88①
	개표소의 설비	구·시·군위원회		법§173③ 규§95①
	개표참관인 선정(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법§181③ 규§102
	공관개표소 설비(사유발생시)	재외투표관리관	개표일 전일까지	규§136의25④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선거일 투표소에서>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신고 후 언제든지	법§161⑤ 규§88①
	개표참관인 교체신고 <구·시·군위원회에, 개표일 개표소에서>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법§181② 규§102④
	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 수령·보관· 인계시 입회	정당추천위원	투표용지수령·보관 및 인계 시	법§151⑤
선거일 4. 10.(수)	투 표 (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투표관리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 제10장
	거소·선상투표 및 사전투표 접수	구·시·군위원회	오후 6시까지	법§155⑤
	재외투표 접수	구·시·군위원회	오후 6시까지	법§218의23② 규§136의24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 개표소 이송	구·시·군위원회	오후 6시 후에	법§176③
	투표함 등 송부 <구·시·군위원회 개표소에>	투표관리관	투표가 끝난후 지체없이	법§170
	개 표 (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마감상황 보고, 개표록 작성 등)	구·시·군위원회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후	법 제11장 법§218의24
	개표록 송부 <선거구위원회, 시·도위원회에>		개표록 작성후	법§185① 규§106
후보자별 득표수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정당별 득표수 및 당선인 결정상황 보고 <상급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	법§185②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정당별 득표수 계산·공표 및 집계록 작성·송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위원회에>	시·도위원회	개표록, 개표및선거기록을 송부받은 때	법§185③
	정당별득표수 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위원회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	법§185④
	당선인결정·공고·통지, 당선증 교부	선거구위원회	지체없이	법§188,§189
	공관 개표(사유발생시)	재외위원회	오후 6시 후에	법§218의24③~⑥ 규§136의25
4. 10.(수)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총선의 직 복직금지	선거사무관계자 등	선거일까지	법§60②
4. 20.(토)까지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및 공고·통지 <해당 당선인, 소속정당에>	선거구위원회	선거일후 10일 이내	법§193① 규§111
4. 22.(월)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일후 1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4. 24.(수)까지	선거효력에 관한 소청 <시·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지방선거]	선거인, 후보자추천정당, 후보자	선거일부터 14일 이내	법§219①
	당선효력에 관한 소청 <시·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지방선거]	후보자추천정당, 후보자	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법§219②
	선거의 효력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공고 및 결정서 송달 <소청인, 피소청인, 참가인에게> [지방선거]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220①③
	선거소송, 당선소송 제기 <고등법원, 대법원에> [지방선거]	소청인, 당선인, 피소청인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소청결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소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	법§222② §223②
4. 25.(목)까지	기탁금 부족액 납부고지 <해당 기탁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후 15일까지	규§25④
	기탁금 부족액의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해당 기탁자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법§57②
	기탁금 부족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 요구	선거구위원회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57③ 규§25④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 송부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당선인 결정 후 15일 이내(요청이 있는 경우)	법§49⑨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4. 30.(화)까지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마감	회계책임자	선거일후 20일까지	정금법§40①
5. 10.(금)까지	선거소송 제기 <대법원에>	선거인, 후보자 추천 정당, 후보자	선거일부터 30일 이내	법§222①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기탁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후 30일 이내	법§57① 규§25①
	귀속기탁금의 정산내역 통지<기탁자에게> 및 중앙위원회(지방자치단체) 수입징수관에게 납입 [지방선거]			법§57② 규§25②
정치자금 회계보고 <해당위원회에>	회계책임자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정금규§40①	
5. 17.(금)까지	선거비용 추가보전 청구 <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정치자금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	규§51의3①
	당선소송 제기 <대법원에>	후보자 추천 정당, 후보자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법§223①
	당선인의 병역사항 통보 <병무청장(원본), 소속기관의 장(사본)에게>	선거구위원회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병법§9④ 공병령§16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 사본의 열람기간· 장소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공고	관할위원회	회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	정금법§42① 정금규§41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 보고, 자료제출요구 등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각급위원회 (읍·면·동 위원회 제외) 위원·직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정금법§43① 정금규§43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인터넷 (선거비용에 한함) 공개 <누구에게나>	관할위원회	공고일부터 언제든지	정금법§42②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의 사본 교부신청 및 교부에 필요한 경비납부 <해당 위원회에>	사본교부신청인	공고일부터 언제든지 ※ 사본교부신청시 수입인지 첨부	정금법§42② 정금규§41③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이의 신청 <관할위원회에>	이의있는 자	공고일부터 언제든지	정금법§42⑥ 정금규§42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의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통지 <회계책임자, 관계인에게>	관할위원회	이의신청을 받은 때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의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관할 위원회에>	회계책임자, 관계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조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이의신청 내용과 소명내용 등 공고·통지 (이의신청인에게)	관할위원회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와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 지체없이	정금법§42⑧
5. 20.(월)까지	선상투표신고·선상투표에 사용한 팩시밀리 송·수신기록과 통신요금 내역을 첨부하여 보전청구 (관할 시·도위원회에)	선박회사	선거일후 40일까지	규§86의4①
6. 9.(일)이내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지급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인계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후보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후보자	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정금법§58①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사실통지 및 보전비용 반환 명령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	법§135의2⑤ 규§59의2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보전비용 반환 (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법§135의2⑤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		반환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	법§135의2⑥
	보전유예비용의 납입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유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법§135의2④ 규§59의2③
	보전을 유예한 선거비용의 지급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무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규§59의2③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고지 (해당 정당·후보자에게)		반환사유가 발생한다 때 지체없이	법§265의2②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납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해당 정당·후보자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징수위탁 (해당 중앙당·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선거구위원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265의2③
10. 10.(목)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의 장의 종전의 직 복직금지	선거사무관계자등	선거일후 6월 이내	법§60②